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7213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1. [redacted]세무서장
	2.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redacted]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구합1269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redacted]세무서장이 2012.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내역'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redacted]시장이 2012. 1. 2.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내역'란 기재 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항소심에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redacted]시장이 한 지방소득세 가산금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피고 [redacted]시장이 한 지방소득세 본세 부과처분 내역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2쪽 제17행의 "25,427,370원"을 "25,175,150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6행부터 제14행까지("2. 이 사건 소 중 가산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분)를 삭제하고, 제15행의 "3. 본안에 관한 판단"을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 제7쪽 제16행부터 제19행까지("4. 결론" 부분)를 삭제한다.

○ 제9쪽 [별지1] "부과내역"의 내용을 이 판결 [별지1] "부과내역"의 내용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재판장 판사 정형식

판사 강경구

판사 남양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16

[별지1]

부과내역

세목	귀속연도	부과세액(원)
종합소득세	2006	76,169,210(가산세 28,180,863원 포함)
	2007	70,240,300(가산세 22,725,729원 포함)
	2008	38,631,190(가산세 10,574,870원 포함)
	2009	42,315,460(가산세 8,166,657원 포함)
	2010	24,395,500(가산세 3,404,290원 포함)
소계		251,751,660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2006	7,616,920
	2007	7,024,030
	2008	3,863,110
	2009	4,231,540
	2010	2,439,550
소계		25,175,150

-끝-